

## 2. 證券去來法施行令中改正令

大統領令 第13,634號 1992. 4. 28

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3조제5호”를 “법 제3조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상환사채 발행의 승인을 얻은 자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사채

제4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법 제3장 적용제외 유가증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3항 각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83조의2 (사실상의 지배주주) 법 제1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주주라 하더라도 임원의 임면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제83조의3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  
법 제18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의한 규제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매매하는 경우
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그 산업화리화기준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3. 정부의 허가·인가·승인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4.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

5. 유가증권시장에서 허용되는 최소매매 단위미만의 매매, 근로자증권저축에 의한 매매,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취득등의 경우로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한 매매가 아니라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증권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결제회사

② 공사채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결제회사

## □ 개정 이유 □

증권거래법이 개정(1991. 12. 31, 법률 제4,46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증권관리위원회의 권한중 조사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등을 증권감독원장에게 위임하는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 주요 골자 □

가. 주택상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발행인에 대하여는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과 기업의 공시를 위하여 실시하는 증권관리위원회에의 등록을 면제함(영 제3조제3항).

나.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을 500억원으로 정함(영 제14조제1항).

다. 외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그 증권업을 중지·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영 제15조의2제4항).

라.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이상매매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권회사에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영 제38조제5호).

- 마. 증권관리위원회의 권한중 조사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소송업무의 수행에 관련된 사항을 증권감독원장에게 위임함(영 제67조의3제2항).
- 바. 종전에는 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을 주요주주로 보아 내부자거래를 규제하고 있었던 바, 이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임원의 임면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인 경우에는 이들을 주요주주에 포함하여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도록 함(영 제83조의2).
- 사. 내부자거래로 인한 단기매매차익에 대하여 반환업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법령에 의한 매매, 산업합리화기준에 의한 매매등으로 정함(영 제83조의3).
- 아. 상장법인의 주식을 5퍼센트이상 소유한 자중 그 주식의 소유상환등의 보고업무가 면제되는 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증권금융회사등으로 정함(영 제86조의2).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 2백만호 너와나의 보금자리**